의안 번호	40

제155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7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6.9.28.)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창 원 시 의 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28.(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6. 8. 24.

나. 발 의 자: 서명일 의원 등 12명

다. 회부일자: 2026. 8. 27.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155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7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6. 9. 28.) 상정, 질의·답변, 토론, 의결
(의안번호 제40호)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서명일 의원)

○ 우리 시 경계 지역에 거주하거나 인접 시·군 유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종량제봉투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접 자치단체에 소재한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및 농축산물 유통매장 등을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인접 지방자치단체 소재 점포에 대한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근거를 신설함(안 제11조제2항)

나.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신청 및 지정취소 주체를 관할 읍·면·동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다. 종량제봉투 제작·공급·판매 관련 확인 주체를 시장으로 일원화함(안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조례

1)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7항

2) 기후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나. 조례안예고(2026. 8. 24.~8. 31.) 결과: 의견 없음

다.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전문위원 검토요지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가. 개정목적

○ **본 개정조례안은** 창원시 경계지역에 거주하거나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유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종량제봉투를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창원시에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및 농축산물 판매매장 등을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검토

○ 안 제11조제1항 및 안 제12조제1항은

-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신청 및 지정 취소·제한의 주체를 현행 관할 읍·면·동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임.

- 이는 안 제11조제2항에서 창원시에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시설을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창원시 관할구역 밖에 위치한 인접지역 판매소의 지정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업무의 주체를 시장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으로 판매소 관리체계를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인접 지방자치단체 소재 판매소에 대한 지정·취소 권한의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행 '관할 읍·면·동장'을 '시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단순히 '읍·면·동장'을 '시장'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이라는 표현이 남아 권한 주체가 불명확해질 수 있음.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판매소의 지정) 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판매소의 지정) ① ---------- 시장----------.
제12조(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① 관할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① ---- 시장----------.

⇩

<수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11조(판매소의 지정) 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판매소의 지정) ① ---------- ---------- 시장---------- ----------.
제12조(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① 관할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① -- - 시장---------- ---------- ----------.

○ 안 제11조제2항은

- 시장이 시민의 종량제봉투 구입 편의를 위하여 창원시에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시설을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 창원시와 인접 지역의 유통시설에서도 창원시 종량제봉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판매소 지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시민의 구입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7항[1]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제작·유통·판매 대행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고, 기후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서도 인접 시·군·구의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어, 상위법령 및 관련 지침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기후환경부) >

1)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종량제봉투에 관한 사항

마.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시·군·구 별로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보급하는 경우에는 대형유통매장,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위치한 시·군·구의 재사용 종량제봉투와 **인접한 시·군·구의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함께 판매하도록 허용**

- 대형유통매장이나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서 재사용 종량제봉투 공급을 요청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는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

- 다만, 해당 지침에서 인접 시·군·구의 판매를 허용하는 대상은 '재사용 종량제봉투'인 반면, 개정안은 판매 대상을 별도로 한정하지 않고 '종량제봉투'로 규정하고 있어 일반용 봉투 등 종량제봉투의 종류 전체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기후환경부) >

❑ **종량제봉투 종류·재질·규격 등에 관한 사항**

○ 종량제봉투의 종류

- 일반용 봉투 용량: 1L, 2L, 3L, 5L, 10L, 20L, 30L, 50L, 75L
- **재사용 종량제봉투: 3L, 5L, 10L, 20L, 30L**
- 공공용 봉투 용량: 30L, 50L, 75L
- 1회용 비닐봉투 전용봉투 용량: 3L, 5L

- 특히 타 지자체의 유사 조례에서도 판매 대상을 '재사용 종량제봉투'로 규정하고 있어, 인접 지방자치단체 소재 판매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종량제봉투의 범위를 재사용 종량제봉투로 한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법정 개념으로서 대상 시설의 범위가 비교적 명확한 반면, 제3호의 "그 밖에 농축산물 등을 판매하는 매장"은 별도의 시설

기준이나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대상이 다소 포괄적임. 따라서 실제 판매소 지정 과정에서 대상 시설의 범위와 지정 여부에 대한 일관된 판단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향후 구체적인 지정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3조**는

- 종량제봉투의 제작·공급·판매와 관련한 확인 및 관리 업무를 '시장'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임.

- 이는 인접 지방자치단체 소재 시설까지 판매소 범위가 확대되는 개정 취지에 맞추어, 종량제봉투 판매자에 대한 지도·감독 주체를 시장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인접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판매소는 창원시의 행정구역 밖에 위치하는 만큼, 종량제봉투의 공급 체계 및 판매소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정산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창원시 경계지역 주민과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유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종량제봉투를 보다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인접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및 농축산물 등을 판매하는 매장을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또한, 인접 지방자치단체 소재 시설까지 판매소 지정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관리 주체를 시장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조례의 적용 범위를 고려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다만, 안 제11조제1항 및 안 제12조제1항은 수정안과 같이 ‘관할 읍·면·동장’을 ‘시장’으로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안 제11조제2항은 관련 지침에서 인접 시·군·구 판매 대상으로 제시한 ‘재사용 종량제봉투’보다 넓은 범위의 ‘종량제봉투’로 규정하고 있어, 판매 대상 봉투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아울러 같은 항 제3호의 ‘그 밖에 농축산물 등을 판매하는 매장’은 대상 범위가 포괄적이므로, 판매소 지정 과정에서 일관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구체적인 시설 기준과 지정 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판매 기반을 확대하여 시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종합적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6. 질의·답변 요지: 기재 생략

7. 토론 요지: 기재 생략

8. 심사 결과: **수정 가결**

9. 소수의견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부대의견, 건의 사항, 촉구사항 등): 없음

붙임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붙임 (수정안)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40호 관련

제 출 일 자 : 2026. 9. 28.
제 안 자 : 문화환경도시위원장

1. 수정이유

❍ 인접 지방자치단체 소재 판매소에 대한 지정·취소 권한의 주체를 창원시장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

2. 수정내용

❍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중 “관할 읍·면·동장”을 “시장”으로 한다.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관할 읍·면·동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관할 읍·면·동장”을 “시장”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11조(판매소의 지정) 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판매소의 지정) ① ---------- ---------- 시장---------- ----------.
제12조(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① 관할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① -- - 시장---------- ---------- ----------.

참고 타 지자체 조례 현황

구 분	조 례 내 용
수원시	제22조의3(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접한 시(지방자치단체)의 대형유통매장,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해당하는 판매소는 시장에게 지정받고 재사용봉투를 판매**할 수 있다.
고양시	제18조(종량제 봉투등의 공급 및 판매) ⑤ 판매소로 지정된 대형 유통매장,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서는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판매**할 수 있다.
광명시	제15조(판매소의 지정) ⑤ 대형유통매장,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해당하는 판매소는 **인접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함께 판매**할 수 있다.
시흥시	제20조의2(종량제봉투등 판매소 지정등) 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동법 제2조제4호의 준대규모점포(이하 "준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는 **인접한 시의 재사용봉투를 함께 판매**할 수 있고, 인접한 시의 준대규모점포등은 시장에게 지정을 받고 재사용봉투를 판매할 수 있다.
천안시	제26조(판매소 지정) ④ 시장은 천안시 관내 대형유통매장,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 천안시의 재사용 종량제봉투와 **인접한 시·군의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소 지정을 할 수 있다.
청양군	제22조(판매소 지정) ④ 군수는 청양군 관내 대형유통매장,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 청양군의 재사용 종량제봉투와 **인접한 시·군의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소 지정을 할 수 있다.